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경유)

제목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자가진단 실시 안내

1. 근로자들의 든든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동법 교육 및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드리니, 귀 사업장에서는 교육수강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자가진단표 및 개선결과표)를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우리청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노동법 교육 및 자가진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중앙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영상)」, 및 「노무관리 가이드 북」,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참조
 - * 「노무관리 가이드 북」,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검색
 - ☞ ‘23.3월부터는 「대국민 디지털 노동포털(‘23.3월 ~)」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 및 자가진단 실시 예정 (포털 개시 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4. 아울러,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의 충실도에 따라 금년 「감독」 대상 사업장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자가진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충실도 판단기준>

- ❖ [충실성 有] 감독대상 선정에 제외될 가능성 높음
 - ① 근로자대표 등(예를 들어, 과반수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문공인노무사 참여)이 참여하여 자가진단 후 자가진단표 또는 개선결과표(붙임)를 제출한 경우
 - ②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예를 들어, 경총, 상의, 공단, 협회)의 지원을 받아 자가진단 후 자가진단표 또는 개선결과표(붙임)를 제출한 경우
 - ③ 자가진단 결과 일부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자율개선 의지가 있는 경우(유선 확인) 고용센터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한 경우
- ❖ [충실성 無] 감독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자가진단표 미제출 또는 자율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예를 들어, 자가진단표 또는 개선결과표에 형식적으로 전부 준수로 기재한 경우)

붙임 개선결과표 1부. 끝.